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9. 12(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 8. 16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3. 8. 16

라. 상정일자 : 2013. 9. 6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안 제2조)
 -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의료원 내에 설치함

- 지원단의 기능(안 제3조)
 -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등 추가
- 지원단의 조직 등(안 제4조)
 - 지원단의 정원 및 인력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사업계획승인 및 실적보고(안 제5조)
 - 지원단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비용의 보조(안 제6조)
 -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 기 간 : 2013. 7. 15 ~ 8. 4(20일간)
- 방 법 : 시의회 홈페이지, 공문 (관계부서)
-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및 필요성

- 기존 공공의료의 개념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서비스로 공공병원인 의료원이나 보건소(지소)에서 수행하는 의료 행위, 즉 공공기관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최근 공공의료의 개념은 전국민에게 적정진료를 하고 현대적인 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갖춘 병원의 개념으로서 적정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수행

하고 수익성이 없어 민간이 공급을 꺼려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소(지소)는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관리 등 국가 보건의료 사업과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어 가고 있음.

- 현재 인천광역시의 공공의료 공급체계를 보면 1차 보건의료 영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보건기관이 제공하고 있고, 1차 의뢰 수준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인천광역시 의료원, 적십자 병원, 인천산재의료원 등에서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적십자 병원과 산재의료원은 병상의 규모와 병원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보건기관과 연계체계가 형성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 간에 협력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임. 또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경우에도 공공의료체계의 부재 속에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며, 시립요양병원 역시 별다른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¹⁾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정책의 비전 및 중장기 아젠다 발굴, 지역사회 의료자원 간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지원, 공공의료기관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하려는 것임.

1) 인천광역시 공공의료 발전계획 및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의료 강화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감. 2011.12 p205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종별	소재지	개설년도	병상수	의사수	진료과목수	설치근거법규
인천광역시 의료원 (백령병원 포함)	종합 병원	동구 송림동 318-1	1985. 7. 1	316	32	1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적십자 병원	종합 병원	연수구 연수동 580-3	1956년도	153	15	1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경인의료 재활센터병원	병원	연수구 연수동 580-3	2010.10. 8	150	3	1	장애인복지법
인천산재병원	병원	부평구 구산동 47-3	1983. 2.28	430	29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인천제1시립 노인치매 요양병원	요양 병원	서구 심곡동 288	2002. 7.16	132	4	4	인천광역시립노인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인천제2시립 노인치매 요양병원	요양 병원	계양구 갈현동 80-1	2009.10.26	103	3	2	”

나. 주요내용

조례안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근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²⁾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제17조제2항)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 두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근거 규정이

2)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닌 조직과 운영,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단의 설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인천의료원 내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공공보건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재생산,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생산 조직 구축을 위해 지난 2012년 3월 6일 인천의료원 부설연구소로 공공의료 정책 연구소가 설치되었음.
- 공공의료 정책 연구소는 공공보건의료정책 연구, 공공임상역학 연구, 만성질환관리 등을 위한 역학조사 및 정책 연구, 외부기관 위탁 연구 또는 조사 등이 주요사업이며 현재까지 3건의 공공의료 정책 연구 관련 외부 용역 수주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공공의료정책 세미나를 8회 개최하는 등 실적이 있음.
- 우리시에서는 공공의료 정책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통합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내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소와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공의료 정책 연구 관련 외부 용역 수주 현황

발주기관	용역기간	용역금액 (천원)	연구내용	비고
보건복지부	12. 7. ~ 12. 12. (6개월)	40,000	경제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체계 구축	수주
건강증진협회	12. 8. ~ 12. 11. (4개월)	15,000	2012년도 학교흡연 예방교육 사업 평가	수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12. 8. ~ 13. 01. (6개월)	30,000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만성질환관리 연계 현황 조사 및 모형 개발	수주

※ 공공의료정책 세미나 개최 실적

연번	일시	주 제	발표자
1	3. 28	-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공공보건의료체계 및 공공병원의 현주소	가천의대 임준 교수
2	4. 25	- 보건의료서비스 인력 양성체계와 공공병원의 인력수급의 문제점	건양의대 나백주 교수
3	5. 17	- 공공병원의 비전, 목표, 참여민주주의 문제	참의료실천단 장정화 단장
4	5. 23	- 병원조직의 특성과 내부구성원의 목표와 과제	가천의대 임준 교수
5	6. 27	-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목표와 과제	가천의대 임준 교수
6	7. 11	- 건강증진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과 과제	인천의료원 방예원 과장
7	8. 8	- 정신건강종합계획 - 우리나라 지역정신보건 체계	부설연구소 박미주 연구원
8	9. 20	-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한국의 공공의료에 주는 함의	스톡홀름대학 최연혁 교수

□ 기능(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규정

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제1항3)에 규정한 사항과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정보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시장은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조직 등(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직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하고, 지원단장을 비롯한 지원단 인력의 자격기준,

3)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과의 협력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등 필요한 사항

채용, 임면 등의 절차 및 방법, 급여기준 등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인천광역시의료원 내에 부설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 정책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존 운영인력 3명을 5명으로 하고 지원단장 1명,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행정요원 1명 등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음⁴⁾.

□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와 그 기한을 규정하고 있음.
- 지원단장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용보조(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2조 제2항에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4)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은 단장 1명, 실장 2명, 연구원 18명의 인력과 2실 5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국비보조금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박승희, 신현환, 강병수, 김기홍, 박순남, 신동수, 안영수, 제갈원영 위원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출범하게 되면 인천의료원과 지원단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지원단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 보건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위해 지원단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 답 변 >

-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우리시의 보건

- 복지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 지원단장 및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채용, 임면 등의 절차 및 방법, 급여기준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굳이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자문위원회는 지원단 내에 구성하도록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해 실시할 계획에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박승희, 신현환, 강병수, 김기홍, 신동수, 안영수, 제갈원영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의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2조 본문 중 “인천의료원”을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 한다.

안 제3조 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u>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u>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단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u>인천의료원</u> 내에 둔다.</p> <p>제3조(기능)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u>에서 규정한 사항 2. ~ 4.(생략) 	<p><u>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u></p> <p>제1조(목적) ----- ----- ----- -----<u>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u>----- -----</p> <p>제2조(지원단의 설치) ----- ----- -----<u>인천광역시의료원</u>----- -----</p> <p>제3조(기능)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 2. ~ 4.(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설치)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의료원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2.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3.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정보체계 구축
4.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지원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③ 지원단장을 비롯한 지원단 인력의 자격기준, 채용, 임면 등의 절차 및

방법, 급여기준 등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비용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